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의 안 번 호	2438
------------	------

이성배 의원 (송파구, 제4선거구)

- 존경하는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송파 제4선거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이성배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시장이 반려동물에게 유해한 비료나 농약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제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해 물질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을 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근래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 특히 피자마 유박비료의 경우 다른 유기농 비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비료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아 도심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화단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 해당 비료에는 리신이라는 독성물질이 있어 이를 반려동물이 먹고 폐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시장이 공원, 산책로 및 아파트 단지에 유박비료 같은 반려동물에게 유해한 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제한이 어려울 경우 유해 물질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을 해당 장소에 공지하여 유해 물질의 살포를 막고 반려인에게도 주의를 주어 반려동물이 폐사하는 경우를 막고자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